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유산 보존관리 권한 확대 및 주민지원사업 경비 신설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95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권한 확대 및 주민지원사업 경비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5.

다. 회 부 일 : 2025.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를 시·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Ⅲ. 검토의견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권한 확대 및 주민지원사업 경비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지정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u>시·도지사는</u>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u>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u>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u>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u>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u> 및 <u>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u>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u>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③ <u>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④ (생략)

1. ~ 4. (생략)

<신 설>

②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 3 –

다. 검토사항

- 지정문화유산이란 우리나라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어 국가나 시·도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화유산으로, 현행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은 ①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등의 국가지정문화유산, ②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유산, ③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시·도지정문화유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향토문화 보존 필요성이 인정된 문화유산자료로 구분됨.
- 시·도지사는 이러한 지정문화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이고, 2024년 말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129개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단위: 개)

소계	2,129		
서울	154	강원	161
부산	20	충북	116
대구	40	충남	149
인천	40	전북	169
광주	8	전남	283
대전	6	경북	515
울산	17	경남	207
세종	4	제주	73
경기	164	기타	3

* 자료: 국가유산청(2024. 12. 31. 기준)

- 한편,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의 외부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행정기관)은 그 공사의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공사가 지정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해야 함.
- 또한, 지정문화유산이 지정되면 그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고, 이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그런데 위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고, 지정문화유산 지정 시 행위 기준에 대한 자료·의견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주민지원사업 수립·시행 주체는 시·도지사에 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

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공사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행위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경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집행과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9